발간등록번호 31-9735043-001496-14

국회입법조사처

NARS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15호 2016. 9. 1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Vol. 1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전형진(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2016. 9. 12.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6. 3. 16.
초고 작성기간	2016. 3. 16. ~ 2016. 8. 19
초안 검토	환경노동팀 김 준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6년 8월 23일(화) 오후 4시 – 실무위원: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준, 이만우, 김유향, 유의정 팀장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6년 8월 31일(수) 오후 3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발 간 사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수단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또는 수년간에 걸친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수행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여 정부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언급된 사항들 중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선노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쟁점발굴에 유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확대·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들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 성 호

요 약

□ 세계적인 경기 둔화 및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미래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고용 전망도 밝지 않아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이나 노동시장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면서 정부 역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데 더욱 주목하고 있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인식의 확산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2015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부정수급액 환수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음

○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정부의 위와 같은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이러한 시정 및 처리결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첫째,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조사할 인력 확대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누락되어 있음

○ 둘째, 부정수급 징수절차 개선에 따라 환수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셋째, 정부의 대책이 주로 부정수급자를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사전 방지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담당할 전담팀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부정수급 조사인력에 대한 인사 등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조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부정수급 사전 방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최근 경향도 적발 위주의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로 하여금 부정수급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규모나 유형, 원인, 증감추세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발표함으로써, 부정수급 추이에 따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넷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부정수급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근로자들이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직 전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액이나 지급기간 등을 보완하여 실직 대비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차 례

□ 요약

Ⅰ. 평가배경 / 1

1. 배경 ····· 1

2. 관련 법령 및 제도 ····· 3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 6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6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7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10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10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16

Ⅳ. 개선방향 / 21

1. 부정수급조사 조직 및 인력 확대 ····· 21

2. 부정수급 사전 방지시스템 강화 ····· 22

3. 부정수급관련 통계 관리 및 공표 의무화 ····· 23

4.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26

□ 참고문헌

표 차 례

[표 1]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2
[표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4
[표 3] 자동경보시스템 처리현황 ····· 17
[표 4] 연령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 18
[표 5] 업종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 19
[표 6] 고용형태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 19
[표 7] 자진신고 운영 실적 ····· 20
[표 8] 포상금 지급현황 ····· 20
[표 9] 미국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률 요약 ····· 24
[표 10] 영국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지출율 및 지출액(2014/15) ····· 25

Ⅰ. 평가배경

1. 배경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인식의 확산으로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 때마다 정부는 방지대책과 함께 시정조치결과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왔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15년까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수급 방지 전략의 불균형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됨

○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수급 방지대책들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자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수사 중심의 대책으로 실업급여 지급 이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사전방지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됨

○ 2016년 1월에도 정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국가재정의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2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과 협력하여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수사 중심의 방지대책을 반복하고 있음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부정수급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이에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선진국들이 부정수급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지재정의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더 큰 사회문제로 인식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됨

□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이나 노동시장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2015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7%를 차지하고 부정수급액은 148억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정수급 수법도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음

[표 1]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구 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수급자(A)	지급액(B)	수급자(C)	C/A	금액(D)	D/B
2013	1,209,587	3,881,921	21,735	1.8	11,725	0.3
2014	1,252,677	4,156,135	22,108	1.8	13,092	0.3
2015	1,272,470	4,547,337	21,493	1.7	14,806	0.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6년 1월 11일)

○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직자들이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는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과 이에 대해 정부가 보고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평가해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실업급여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1]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 구직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해 지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업급여임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음(「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1)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피보험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름(「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관련)

[표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 구직급여 외에 다음과 같은 취업촉진수당이 있음(「고용보험법」 제64조~제67조)

○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

○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지급

○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가르킴

○ 부정수급의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며,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소득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지급이 제한되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반환명령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함(「고용보험법」 제6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고용보험법」 제62조)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수급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및 제117조)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2015년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개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정수급 방지노력이 소홀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액 환수노력을 강화할 것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고용노동부	1.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경보를 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사례가 2014년 4,310건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이 소홀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2.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2012년 83.2%에서 2014년 71.8%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하여 노력할 것 3.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피감사기관: 고용노동부
●일시: 2015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회의실, ○○○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며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시스템 활용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2007년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2014년 자체감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시스템의 경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무려 4,310건이나 발견되어 부정수급방지대책으로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2년 218억 6,200만원, 2013년 232억 4,000만원, 2014년 265억 2,9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환수율은 2012년 83.2%, 2013년 79.8%, 2014년 71.8%로 2년만에 11.4% 감소함
-고용보험 제도의 부정수급은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주기를 바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 첫째,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둘째,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 셋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경보를 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사례가 2014년 4,310건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소홀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2015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실업급여)의 중복수혜 의심자는 약 17만 건에 이르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미처리 건이 발생하고 있음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에 노력하겠음('16년까지) * 정당수급 및 착오 건에 대한 분석으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
○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2012년 83.2%에서 2014년 71.8%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환수율 제고 노력 - (징수절차 개선)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 국토부 연계 재산조회시스템 및 금융결제원 중계 예금통장 압류촉탁시스템 구축 및 고용보험지원금 상계시스템 도입 등 징수업무의 신속화 및 용이성 확보 - (전문성 제고)광역징수팀* 운영, 징수담당자 교육 정례화 및 징수업무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화를 통한 징수업무의 전문성 제고 * 지방관서 장기체납금 관리, 강제징수 업무 지원 및 결손 처분 업무
○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고 있음 - (홍보)'16.2월 대대적 홍보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전환 * 실업급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라디오캠페인(MBC FM, TBS, TBN), 6대 특·광역시 지하철 방송, 공공전광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경찰합동 보도자료 배포(1.29) 등 On-off line 홍보(‘16.1~2월) - (사전 예방) 반복 수급 및 부정수급자 관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 (적발강화) 기획조사, 고용부·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16.2~10월) * 2～5월 단속실적(전년동기): 9,955건(46%↑), 99억 원(163%↑), 474건 형사고발(198%↑)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자동경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미처리 건수 감소 노력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2015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실업급여)의 중복수혜 의심자는 약 17만 건에 이르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미처리건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에 노력하겠음(‘16년까지)

- 구체적으로 정당한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음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2016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이 불필요한 경보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① 중복수혜자 중 최종 실업인정 후 당일 취업자가 종전에는 모두 부정수급 의심자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경보대상에서 제외함

- ② 사후경보 중 일용근로자가 신고한 근로일수가 많을 경우 모두 경보시스템에 자동 등재되었으나,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일이 일용근로자

가 신고한 근로일보다 더 많은 경우에만 등재되도록 개선하였음

- ③ 종전의 자동경보시스템 등재 유형중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의심되는 유형은 적발률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함

○ 다음과 같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임

- ① 종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인 비영리단체 대표로 확인되더라도 일단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분류되어, 부정수급 조사관이 모두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종결 처리하였으나, 실업인정 단계에서 간단한 확인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종친회, 종교단체, 아파트 입주자회, 합창단, 봉사단체, 동호회, 비영리협회, 기타 비영리 등)
- ② 수급신청 단계에서 일용근로일 수 허위 신청자로 사후경보된 사람에 대한 확인절차 간소화
- ③ 조사관이 부정수급 통계자료를 자동경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추출·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함
- ④ 종전에는 중복수혜 의심자가 발견되더라도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지 않고 이를 처리해왔으나,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처리건 누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의 자동경보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시스템적 오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나.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환수율 제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환수금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환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함

○ 징수절차 개선 관련

- 가상계좌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임
- 국토교통부의 재산조회시스템과 연계토록 시스템을 구축함
- 금융결제원 중계를 통한 압류촉탁시스템을 구축함
- 지원금 지급결정시 체납된 미납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징수업무 전문성 제고 관련

- 서울청에 광역체납금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중임
- 징수담당자교육을 정례화하고, 징수업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공유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2016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징수절차 개선 관련

- 가상계좌납부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징수금에 대해 인터넷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하여 납부 용이성을 확보함
- 국토부와 연계한 재산조회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쉽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결제원 중계 예금통장 압류촉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납자가 보유한 시중은행 예금통장에 대해 전자 압류촉탁을 가능하게 하였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체납자라 할지라도, 별도의 사유로 고용보험시스템 상에서 지원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체납된 미납금에 대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징수업무 전문성 제고 관련

- 지방관서의 장기체납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청에 광역체납금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관서의 강제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필요시 장기체납금을 결손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징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임: 신규담당자 대상교육(매년 3월), 권역별 집합교육(상·하반기 각 1회), 청단위 순회 실무교육(매년 11~12월) 등을 실시
- 징수업무 담당자들의 온라인커뮤니티를 개설(전국 업무담당자 전원 가입)하여 모든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Q&A를 통하여 당일 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2개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주요사항 공유 및 지방관서 의견청취 창구로 활용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의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제고 관련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재산조회나 압류촉탁 시스템 구축 등 환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적발 강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적발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추진중이라고 보고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라디오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부정수급조사팀 신설,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신설 등 부정수급조사 인프라 확대

○ 국세청 과세정보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중임(「고용보험법」 개정)

○ 부정수급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 중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모형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강화 및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해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중임(「고용보험법」 개정)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라디오 캠페인 등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라디오캠페인(MBC FM, TBS, TBN)(‘16년2월), 6대 도시 지하철 방송, 공공전광판, On-off line 홍보, 경찰합동 특별단속 보도(‘16년1~2월)

○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 및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16년2~10월)

- 기획조사 실적이 ’14년 576건, ’15년 1,425건에서, ‘16년 7월 현재 1,398건으로 크게 증가함
- 2016년 2월～7월 단속실적은 15,528건(전년 동기대비 45% 증가),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68억 원(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 형사고발 건수는 835건(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으로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

○ 기존 6개청 부정수급조사과에 추가하여 3개지청(경기・전주・청주)에 부정수급조사팀을 신설함(‘16년7월)

- 또한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부정수급 유형별 자료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을 설치(‘16년2월)
- 실업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지급 전 모니터링을 강화(‘16년7월4일 이후)

○ 국세청 과세정보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16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재추진 중임
- 법 개정에 앞서 실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음(‘16년6월)
- 정보연계가 완료되면 근로소득 지급조서(국세청)를 통해 ‘수급 중인 취업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출입국 정보(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급 중 재취업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세대 취득정보(행정자치부)를 통해서는 사업주와 동거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후 부정수급 의심자의 금융거래내역·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임

- 법무부 소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협의 중('16년 입법 추진 중)

○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자에 대한 추가징수 강화 및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정기간 수급자격 제한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임

- 제19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16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재추진 중임

※ 3회 이상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제한

※ 공모형·조직적 부정수급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현재 1배)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강화 관련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수사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는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회에서 시정·요구하는 본질적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시정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자동경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국회가 시정 및 처리요구하는 것은 자동경보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경보를 했음에도 처리되지 않은 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임

○ 자동경보시스템의 처리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7월 현재 66.0%에 머물고, 미확인 또는 조사중인 건도 40,193건에 이르고 있음([표3]참조)

[표 3] 자동경보시스템 처리현황

(단위: 건수, %)

년도	등재건수	미확인	조사중	정당수혜	착오	부정수급	처리율	적발률
2013	102,029	1,311	510	57,685	13,288	29,232	98.22	29.17
2014	176,949	7,312	1,126	126,108	12,794	29,602	95.23	17.57
2015	178,073	21,121	1,971	118,405	9,172	27,404	87.03	17.68
2016.7.	118,253	38,786	1,407	61,330	3,889	12,841	66.01	16.4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6년 8월 19일

○ 이에 정부는 자동경보시스템의 오류나 설계 미비로 과다 등재되는 건수를 경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업인정 단계에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미처리건수 감소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부정수급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하는 미처리건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자동경보시스템의 낮은 처리율과 미처리건의 발생 사유에 대해 정부는 인력이 부족하여 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되는 건을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 조사인력 확대를 통해 미처리건 누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담당조사관을 배정하여 미처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이 관할하는 미처리건이 많은 경우 조사관별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조사가 됨으로써 미처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징수절차 개선으로 환수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국토교통부의 재산조회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의 압류촉탁시스템 및 고용보험 상계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인프라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상 50세~60세 이상이 47.4%를 차지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 근로자가 전체 부정수급자의 46.9%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가상납부제도나 예금·재산조회 시스템을 통한 환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임

○ 부정수급액의 징수 및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의 연령이나 업종 및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수방법을 차별화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 연령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60세 이상	50세~59세	40~49세	30~39세	29세 이하
14.7%	32.7%	23.8%	17.8%	11.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6년 9월 6일

[표 5] 업종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건설업	제조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24.2%	22.7%	10.8%	42.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6년 9월 6일

[표 6] 고용형태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상용직	일용직
76.7%	23.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6년 9월 6일

□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적발 강화와 관련해서도 합동단속이나 부정수급조사 인프라 확대 등 사후적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전예방 대책은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은 부정수급 예방활동으로 담당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의무와 부정수급의 유형 및 제재조치사항 등에 대한 고지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임

○ 또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연계시스템이나 정보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부정수급 사전방지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미미한 단계임

○ 영국의 소득세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는 RTI(Real Time Information)이나 주정부가 사업주와 직접 소득정보를 교환하는 미국의 SIDES(State Information Data Exchange System) 등 소득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 및 적발 위주의 대책은 기존의 기획수사를 비롯하여 자진신고[2]나 포상금제도[3]와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정수급조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입법으로 더욱 견고해질 전망임

[표 7] 자진신고 운영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전체부정 수급건수	전체부정 수급액	자진신고		자진신고 운영기간중	
			건수	부정수급액	건수	부정수급액
2013	21,735	11,725	10,631	3,705	0	0
2014	22,108	13,092	10,225	4,031	1,450	612
2015	21,486	14,792	7,395	3,276	1,790	940
2016.7.	16,773	17,607	4,651	2,251	845	41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6년 8월 19일

[표 8]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연 도	건 수	지급액
2011	524	270,700
2012	548	281,392
2013	528	302,260
2014	580	302,315
2015	665	408,977
2016.7.	521	308,06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16년 8월 19일

2) 자진신고 기간 운영: 매년 5월과 10월에 각 1개월씩 운영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Ⅳ. 개선방향

1. 부정수급조사 조직 및 인력 확대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적 대책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팀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조사 인력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9개 지방고용노동청 외에 3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이 없고, 1~2명의 부정수급조사관만 배치되어 있어 부정수급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이 없는 지역 중 부정수급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우선적으로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을 조직하고, 적정 인력의 부정수급조사관을 배치하여야 함

□ 부정수급조사관련 인력의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조사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수당이나 승진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조사관이 해당 업무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다양한 조사경험이나 조사기법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조사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규로 조사업무에 배치된 직원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부정수급 사전 방지시스템 강화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환수조치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적 적발 실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또 다른 행정력을 필요로 하고, 부정수급액 징수에 있어서도 미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어 사후대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최근 경향도 적발 위주의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와 비교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RTI(Real Time Information) 시스템과 국세청의 소득세 시스템(Pay As You Earn: PAYE)을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근로자의 세금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거나 민간회사(CIFAS: Credit Industry Fraud Avoidance Service)[4]가 운영하는 각종 부정지급(fraud) 사례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전에 부정수급 여부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4) 민간 및 공공부문의 사기(fraud) 방지를 위해 1988년부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national fraud database, internal fraud database, protective registration data)를 구축하여 300개 이상 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는 비영리회사임

- 미국 역시 실업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실업급여 지출의 정확성을 위해 '부정수급' 통제에서 '부적정 지출' 통제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미국의 실업보험은 실업급여 지출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험보율제도'로 사업주가 거짓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정보인프라 측면에서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주정부와 사업주간 이직 및 소득관련 정보를 상호 질의와 응답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시스템(State Information Data Exchange System: SIDES)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비롯한 국가재정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사후통제적인 기획조사나 처벌강화 위주의 대책보다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적인 방지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 확인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입법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부정수급관련 통계 관리 및 공표 의무화

□ 부정수급 규모의 지속적 관리 및 공표는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지 않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부정수급 규모에 비해 과도한 방지 대책을 유도하여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반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상으로 부정수급 현실이 심각함에도 미온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협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부정수급 관련 통계나 객관적인 지표의 구축 및 공개는 매우 필요함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를 매년 추정하고 방지대책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IPIA: Improper Payment Information Act)을 2002년 제정하여 정부의 부적정 지출 위험 측정을 의무화한 바 있음

- [표9]에서 보듯이 미국 노동부가 관련 홈페이지에 지난 10여 년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과다지급보고율(overpayment annual report rate), 과다지급운영률(overpayment operational report), 과소지급(underpayments) 등이며, 그 밖에도 원인별로 보다 상세한 분석자료가 공표되고 있음

[표 9] 미국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률 요약

IPIA Reporting Year1	Outlays	Overpayments Annual Report Rate		Overpayments Operational Rate		Underpayments	
	$ Mil.	%	$ Mil.	%	$ Mil.	%	$ Mil.
2004	$37,335	9.70%	$3,622	5.07%	$1,893	0.64%	$239
2005	$32,248	9.46%	$3,051	4.98%	$1,606	0.67%	$216
2006	$30,976	10.23%	$3,168	5.63%	$1,744	0.67%	$208
2007	$31,530	9.71%	$3,062	5.95%	$1,876	0.59%	$186
2008	$42,430	9.25%	$3,925	5.49%	$2,329	0.71%	$301
2009	$119,249	9.60%	$11,448	5.20%	$6,201	0.70%	$835
2010	$156,000	10.60%	$16,536	5.70%	$8,892	0.60%	$936
2011	$114,140	11.35%	$12,955	6.22%	$7,100	0.65%	$742
2012	$90,160	10.81%	$9,746	5.99%	$5,401	0.61%	$550
2013	$66,788	8.82%	$5,891	6.25%	$4,174	0.50%	$334
2014	$48,412	11.16%	$5,404	6.08%	$2,189	0.41%	$200
2015	$32,895	10.29%	$3,384	—	—	0.44%	$146

자료: http://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improp_payrate.asp

○ 영국의 경우는 법률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를 통해 매년 2회 부정수급관련 규모를 공표하고 있음

- 영국이 공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내용은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취업보조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등임
- 또한, 부정수급도 원인에 따라 사기(fraud), 신청오류(claimant error), 사무오류(official error)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표10])

[표 10] 영국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지출율 및 지출액(2014/15)

		Total		Fraud		Claimant Error		Official Error		Last measured
	Expenditure	Rate	Value	Rate	Value	Rate	Value	Rate	Value	
Continuously reviewed										
Housing Benefit	£24.3bn	5.3%	£1280m	2.4%	£590m	2.3%	£550m	0.6%	£140m	Apr 14 - Mar 15
Pension Credit	£6.7bn	4.6%	£310m	1.8%	£120m	1.3%	£90m	1.5%	£100m	Apr 14 - Mar 15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12.8bn	2.9%	£370m	1.2%	£160m	0.8%	£100m	0.8%	£110m	Apr 14 - Mar 15
Jobseeker's Allowance	£3.1bn	5.1%	£160m	3.2%	£100m	0.4%	£10m	1.5%	£50m	Apr 14 - Mar 15
Occasionally reviewed										
Income Support	£3.0bn	3.9%	£120m	2.4%	£70m	1.0%	£30m	0.4%	£10m	Oct 13 - Sep 14
Incapacity Benefit	£0.3bn	2.4%	£10m	0.3%	£0m	0.9%	£0m	1.2%	£0m	Oct 09 - Sep 10
Disability Living Allowance	£13.8bn	1.9%	£260m	0.5%	£70m	0.6%	£90m	0.8%	£110m	Apr 04 - Mar 05
State Pension	£86.6bn	0.1%	£100m	0.0%	£0m	0.1%	£70m	0.0%	£30m	Apr 05 - Mar 06
Carer's Allowance	£2.3bn	5.5%	£130m	3.9%	£90m	1.0%	£20m	0.6%	£10m	Apr 96 - Mar 97
Interdependencies	-	-	£30m	-	£10m	-	£10m	-	£10m	Apr 14 - Mar 15
Unreviewed										
Unreviewed	£15.1bn	1.7%	£250m	0.6%	£90m	0.5%	£80m	0.5%	£80m	
Total	£168.1bn	1.8%	£3.0bn	0.8%	£1.3bn	0.6%	£1.1bn	0.4%	£0.7bn	
Range		(1.5, 2.1)	(2.5, 3.6)	(0.6, 1.1)	(1.0, 1.8)	(0.5, 0.8)	(0.8, 1.4)	(0.3, 0.6)	(0.5, 1.0)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규모나 증감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부정수급 추이에 따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가 공표하는 부정수급 통계 자료가 없어 국민들이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국민적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형 부정수급이 상당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나 지급액의 적절성 등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안전망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가족의 지원이나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다면 실직은 곧 빈곤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실업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직자들이 생계형 부정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더구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경기악화 등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도 하지 못한 실직자들은 실직기간 동안 생활고를 감수해야 함

○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현행 수급액으로 생활유지가 곤란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된 사례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통해 부정수급의 원인을 근

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강화와 함께 실직 대비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 역시 높아질 것임

○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할 경우 실직 근로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고, 지역 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급여 소요재정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실업급여 제도를 보완하여 부정수급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고용노동부 소관)』, 2016.

권구형, 「미국의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 방지사례」, 『해외고용리포트: 2014년 2분기』, 한국고용정보원, 2014.

이상현, 「영국의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정책 동향」, 『해외고용리포트: 2014년 2분기』, 한국고용정보원, 201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2016.9.7.	김여라
제2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	2016.9.7.	정준화 송시현
제3호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6.9.7.	정도영
제4호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2016.9.7.	조규범
제5호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2016.9.7.	심우민
제6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6.9.8.	최병근
제7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개선방안	2016.9.8.	이동영
제8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2016.9.8.	조숙희
제9호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2016.9.8.	배재현
제10호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2016.9.8.	조주은
제11호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2016.9.12.	조인식
제12호	지방공기업 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2016.9.12.	류영아
제13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2016.9.12.	이승열
제14호	재외유권자 투표참여 확대	2016.9.12.	김종갑 임채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15호

발 간 일	2016년 9월 12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73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43-001496-14

Ⓒ 국회입법조사처, 2016

ISSN 2508-4240

NARS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내역을
점검·평가하는 보고서로서
매년 국정감사 이전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